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로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납부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시 “동장에게 신고”를 “구 홈페이지 활용”을 추가
(안 제10조제2항제4호)
- 나.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 시 “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징수”에서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을 추가
(안 제29조제2항)

III. 검토의견

○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마련 하도록”하고 있고,

2004년 7월 30일 우리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서도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종로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홈페이지 안의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IV. 관계법령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871호)
제34조 (비방문민원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3조 (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